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96852 저작권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김수빈
피 고	유한책임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담당변호사 박석민, 정의정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피고는,

가. 별지 기재 출판물을 각 이용, 개작,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 수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락,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나. 피고의 주소지,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기재 출판물의 인쇄본과 전자파일을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6. 4. 7.부터 2026. 4.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별지 기재 출판물을 각 이용, 개작,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 수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락,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1],

나. 피고의 주소지,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기재 출판물의 인쇄본을 폐기하고, 각 출판물의 전자파일을 폐기하거나 원고들에게 양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606,3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들은 2026. 4.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1항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별지 기재 출판물을 …이하 생략…'을 구하고 있는데, 이중 '원고들의 허락 없이' 부분은 무익적 기재로 보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E교회의 담임목사였던 망 F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2022. 6. 9. E교회의 현재 담임목사인 G과 F의 아들인 H이 'I의 출판과 보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이다.

나. F의 성경 번역 및 발행 등

1) F는 1992. 7. 23.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F는 1994. 4. 12. 'D'의 명의로 영문으로 작성된 'J'을 한글로 번역한 'I'을 발행하였고, K일자 위 서적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1994. 1. 31.자 창작 및 1994. 4. 12.자 공표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갑 제4호증).

3) F는 2012. 6. 27. 미국인 L 목사가 위 'J'에 대하여 주석을 추가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M'을 한글로 번역하여 'N'을 발행하였고, O일자 위 서적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012. 6. 27.자 창작 및 공표를 원인으로 한 저작권등록을 마쳤다(갑 제4호증, 이하 'I'과 'N'을 합하여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

다. F의 사망 등

1) F는 2022. 1. 26. 사망하였고, 사망 시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P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H이 있었다. F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은 F의 권리·의무를 각 2/11의 법정상속지분율 범위(배우자 P 3/11, 원고들 및 H 각 2/11)에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설립일인 2022. 6. 9.부터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여 다수의 서점에서 판매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6 내지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서적은 영문으로 작성된 'J'과 'M'을 각 한글로 번역한 서적으로서, 기존 성경 번역본의 오역을 바로잡고,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F는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였고, 원고들은 F의 사망에 따라 각 2/11의 범위에서 F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설립일 무렵부터 권한 없이 이 사건 서적을 제작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또는 양도를 구한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25조의2 또는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이 사건 서적의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이다).

3.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물성

1) 관련 법리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3 내지 1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I'은 구약 성경 부분과 신약 성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구약 성경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I'의 작성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J'을 언어체계가 다른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미, 조사, 접속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번역 취지에 따라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하여 배열한 사실, ② 신약 성경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I'의 작성자는 기존에 출간되었던 'Q'을 기준으로 오역을 바로 잡고, 유의어를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호칭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수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은 번역가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번역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59, 1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의 작성자는 영문으로 작성된 'M'을 언어체계가 다른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 다양한 어미, 조사, 접속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고, 번역 취지에 따라 적절한 어휘와 구문을 선택하여 배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조적 개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은 번역가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번역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한편, 피고도 이 사건 서적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나.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

1) F의 저작권자 추정

가)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본문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자는 F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저작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E교회가 이 사건 서적의 제작을 기획하였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서적의 작성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부설 기관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서적을 공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적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정해진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E교회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F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였음을 전제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2)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판단

(가) F가 E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E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서적의 제작을 위하여 영문 'J', 영문 'M'의 번역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서적의 번역 및 발행처란에는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제4, 14호증), ② 피고는 이 사건 서적 발행 이후인 2022. 6. 9.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므로(갑 제2호증), 이 사건 서적의 번역 및 발행처 란에 기재된 'D'는 F가 1992년경 설립한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서적이 피고 또는 E교회의 명의로 공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저작물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F는 이 사건 서적의 번역 초안을 작성한 후 E교회의 교인 중 일부에게 위 번역 초안을 배분하여 이 사건 서적의 번역을 완성하게 하였는데, ① F 작성 번역 초안의 내용과 이 사건 서적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 특히 E교회 교인 중 S, T는 메모자료·토의자료·연구강의용 노트·번역연구 노트·번역 질의응답 노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원문비평 강의안 노트·번역 연구 노트를 작성하거나 'U 또는 Q'에 수정안을 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역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작성하였고, V, W, X, Y, Z, R은 D에서 발행한 'AA'이라는 학회지에 기존에 번역된 성경에 대한 수정 의견을 게시하는 등 F의 번역과는 별도로 이 사건 서적의 번역을 연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F 및 E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이 사건 서적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은 E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고, 공동저작권자 상호간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3) 인정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6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독교의 정경으로, 구약 39권은 히브리어로 저술되어 있고, 신약 27권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저술되어 있다.

(나) 'J'은 히브리어 및 헬라어로 작성된 성경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서적이고, F는 1985년경부터 노트에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문 'J'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이하 F가 번역을 위하여 수기로 작성한 노트를 합하여 '번역 초안'이라 한다).

(다) F는, ① 1988. 12. 20.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한글 번역본인 'AB'을 발행하였고(을 제66호증), ② 1990. 3. 30.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번역본인 'AC'을 발행하였으며(을 제67호증), ③ 1991. 7. 10. 'D'의 명의로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렬적으로 기재한 'U'을 발행하였다(을 제68호증).

(라) E교회는 1992. 4. 12. F를 담임목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E교회가 설립된 이후 위 교회의 교인이었던 R, AD, G, AE, S, AF 등이 교열위원으로서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서적의 번역에 참여한 E교회 교인들을 합하여 '교열위원'이라 한다).

(마) F는 1992. 10. 30. 'D'의 명의로 'Q'을 발행하였고(을 제69호증), 1994. 4. 12. 'D'의 명의로 'I'을 발행하였으며, 2012. 6. 27. 'D'의 명의로 'N'을 발행하였다.

(4)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24, 31, 37,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① F와 교열위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서적을 창작하였다거나, ② 교열위원들이 이 사건 서적 중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열위원들이 번역에 참여한 이후 이 사건 서적의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I'의 신약 성경 부분은 기출판된 'U'과 'Q'의 내용을 기초로 번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었고, 'I'의 구약 성경 부분과 'N'의 경우 '① F가 수기로 작성한 번역 초안을 AG, AH, AI에게 제공하고, ② AG 등은 번역 초안의 내용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하며, ③ 교열위원들은 각자가 교열을 담당할 부분을 정한 뒤, AG 등으로부터 해당 부분의 번역 초안을 전달받아 번역 초안의 인쇄본에 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안을 작성하고, ④ F는 교열위원들로부터 수정 취지를 청취한 후 수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⑤ 교열위원들이 확정된 수정안을 함께 읽으며 최종 점검을 한 후 인쇄업체에 최종본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증인 R의 증언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은 F가 작성한 'U' 또는 번역 초안을 기초로 교열위원들의 교열작업을 거쳐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람을 결정함에 있어, 위 교열작업을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작성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갑 제24호증의 기재,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교열위원들은 F 작성 번역 초안의 어색한 표현을 다듬고, 용어를 일치시키며, 오탈자를 수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원문인 'J' 또는 'M'의 번역을 수행하였지만, 이는 번역 초안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번역에 불과하였다. 또한 교열위원들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번역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내는 경우, 교리적 차이가 있거나 의미 변화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F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갑 제24호증 참조), 예외적으로 오탈자 수정 및 표준어로의 수정, 기존에 이미 F가 승인한 부분에 대한 수정만이 F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증인 R의 증언 녹취록 4쪽 참조). 이에 의하면, 교열위원들의 주된 역할은 용어 일치, 오탈자 수정, 내용 점검 등에 불과하였고, 교열위원들이 영문 'J' 또는 영문 'M'을 부분적으로 번역하여 F에게 수정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수정 의견의 반영 여부는 F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다) 교열위원이었던 S, R과 E교회의 집사인 AJ는 2002. 11. 19.경 F를 'I'의 저작권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①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I이 신청인 F에 의하여 창작된 사실과 1994. 1. 31.에 완성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창작 사실 확인서', ②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성경책 I은 저작자가 F이나 공표 시 저작자 F가 대표인 D로 번역자를 표기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맨 처음 공표 사실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 제15호증).

또한 AJ는 2000. 1. 4.경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I은 한 사람이 13여년 동안 번역한 것이므로 J과 다르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I의 저작권은 D에 있습니다'라 답하였고(갑 제41호증),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4. 6. 13. F의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던 중 '예를 들면 성명권 이라는게 있거든. …중략… 그 사람이 원 저작자라는 걸 표기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번역자가 F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F를 표기를 해야 하거든. 그게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야. 우리는 그냥 D라고 표기를 했잖아. 그전엔 F 목사님과 D랑 똑같으니까. …중략… 여기서 교회가 법적으로는 저작권이 없어'라 이야기하였다(갑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31-1호증).

이에 의하면, 교열위원이었던 S, R과 E교회의 집사이자 피고의 지배인인 AJ는 이 사건 서적의 번역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서적의 번역자를 F로 인식하고 있었다.

(라) F는 영문 'J'의 번역을 시작한 사람이자 E교회를 만든 담임목사로서, 성경 학교 등의 활동을 통하여 E교회의 교인들에게 영문 'J'의 내용 및 이에 따른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고, 교열위원들은 E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열작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F와 교열위원들의 관계, 앞서 살펴본 교열위원들의 역할, 이 사건 서적이 작성된 후 저작권 등록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F와 교열위원들이 이 사건 서적을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을 제18 내지 62호증, 을 제83 내지 133호증, 을 제1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 작성 번역 초안의 내용과 이 사건 서적의 내용, 그리고 F가 홀로 작성한 'U'의 내용과 교열위원들의 참여 이후 작성된 'Q' 및 이 사건 서적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는 번역 초안을 작성한 후에도 번역 초안에 수정안을 가필하거나 기출판된 'U'에 수정안을 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역을 수행하였고(갑 제37호증), 교열위원들의 교열작업 중에도 먼저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증인 R의 증언녹취록 5쪽 참조), 번역 초안 및 'U'의 내용에서 이 사건 서적의 내용으로 변경된 부분이 모두 교열위원들로부터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교열위원들이 이 사건 서적 중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바) 을 제136 내지 145호증, 제1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열위원 중 S와 T는 이 사건 서적의 수정을 위하여 메모자료·토의자료·연구강의용 노트·번역연구 노트·번역 질의응답 노트·원문비평 강의안 노트·번역 연구 노트를 작성하거나 'U 또는 Q'에 수정안을 가필한 사실(을 제136 내지 145호증), 교열위원 중 V, W, X, Y, Z, R은 D에서 발행한 'AA'에 기존에 번역된 성경에 대한 수정 의견을 게시한 사실(갑 제146호증)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메모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 중 'hell'에 관한 번역이나 하나님의 명칭에 관한 번역은 F 또한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F는 'U'에 '행 2:37 음부 → 지옥'이라 메모하였고, 에스겔서에 관한 번역노트에 'Lord God'의 번역에 관하여 수차례 수정하였다. 갑 제37호증, 을 제93-2호증 참조), 위 메모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교열위원들로부터 창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E교회의 담임목사인 F와 교인들인 교열위원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위 메모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F의 의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S 등이 이 사건 서적의 일부 문구를 번역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66권(= 구약 39권 + 신약 27권)의 성경 내용 중 위 메모자료 등에 기재된 'hell', '영혼', 'for the forgiveness of sins', 'Jehovah', 'Lord', 'God' 등의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수정 의견의 반영 여부도 F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S 등 교열위원들이 이 사건 서적 중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 상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가 2022. 6. 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서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에 관한 F의 저작권을 각 법정상속지분율인 2/11 지분의 범위에서 상속하였다[2].

다. 피고의 침해행위

피고가 이 사건 서적과 동일한 서적을 제작하여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서적 이용허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인 F 또는 E교회로부터 이 사건 서적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2) 판단

가) F로부터 이용허락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적의 이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교회로부터 이용허락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교회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작권침해금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2) F의 상속인인 H은 이 사건 서적 중 'N'에 관하여 H을 단독 권리자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였는데,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은 권리변동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저작권법 제54조 참조), 나아가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권리변동 등록에도 불구하고 F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저작재산권을 법정상속지분율 범위에서 상속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는 피고가 과거에 침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에게 침해행위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F의 상속자인 H과 원고 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H과 원고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들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서적을 제작 및 발행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에서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③ E교회는 "I과 이에 기조한 진리의 서적을 출간 보급하는 문서 선교 사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E교회 정관 제2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서적을 이용, 개작, 인쇄, 제본, 출판, 판매, 배포, 수출, 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허락,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주소지, 본점, 지점, 영업소, 사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서적의 인쇄본 및 전자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이 사건 서적의 전자파일 폐기 또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서적의 전자파일을 양도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서적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전자파일 양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중 각 2/11 지분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가) 원고들은, 'D와 I 출간 현황 요약'(갑 제46-1호증)의 '판매가액'란에 '2021년 462,350,000원, 2022년 300,000,000원, 2023년 232,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에 '참고로 성경의 제작 원가율은 최소 판매가의 40% 이상이다'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서적의 매출액은 '판매가액'란 기재 금액을 합산한 994,350,000원(= 462,350,000원 + 300,000,000원 + 232,000,000원)이 되고, 침해기간인 2022. 6.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의 예상 순이익은 762,335,000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액 994,350,000원 ÷ 36개월 × 46개월 × 이익률 60%)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로 얻은 피고의 이익 중 원고들의 지분 범위인 손해배상금 각 138,606,364원(= 762,335,000원 ×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와 I 출간 현황 요약'은 AJ가 피고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적 등의 판매로 이익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얻지 못하고 있는바, 위 문서 중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위 문서에 기재된 '연간성경매출액'과 '판매가액'의 액수가 상이하고, '연간성경매출액'과 '원가율'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 및 근거자료도 알 수 없는 점, ③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고의 전체 매출 중 성경 매출의 비중은 54.2% 내지 67.8%였으므로, 피고의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서적의 제작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가) 원고들은 'D와 I 출간 현황 요약'에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료가 이 사건 서적의 매출액 대비 3% 내지 20%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건 서적의 매출액 합계인 994,350,000원을 기준으로 침해기간인 2022. 6.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저작권료를 계산하면 254,111,667원(= 994,350,000원 ÷ 36개월 × 46개월 × 20%)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저작권료 중 원고들의 지분 범위인 손해배상금 각 46,202,121원(= 254,111,667원 ×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와 I 출간 현황 요약'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료가 이 사건 서적의 매출액 대비 3% 내지 20%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서적의 매출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저작권법 제12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

가) 이 사건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AJ 작성 'D와 I 출간 현황 요약'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60개월) 매출액은 합계 1,071,401,139원(= 2019년 매출액 175,075,090원 + 2020년 266,588,320원 + 2021년 223,912,975원 + 2022년 203,328,500원 + 2023년 202,496,254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를 원고들이 구하는 침해기간인 2022. 6. 9.부터 변론종결일인 2026. 4. 7.까지의 예상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821,407,539원(= 1,071,401,139원 ÷ 60개월 × 46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가 되는 점, ③ 'D와 I 출간 현황 요약'에 의하면, 인건비와 판관비를 제외한 이 사건 서적의 원가율은 매출액의 40% 이상인 점 및 이 사건 서적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인건비와 판관비, 피고의 침해행위 기간, 침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이 사건 서적의 배포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각 15,000,000원으로 정한다(배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므로, 그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들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및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서적의 배포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종료일인 2026.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이혜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판사 김선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5

별지

저작물 목록

연번	제목	구분	종류	형태 및 수량	등록번호
1		2차적저작물	어문번역물	책1권	
2		2차적저작물	어문번역물	책1권	